

보도 일시	2022.2.18.(금) 조간 2022.2.17.(목) 11:00	배포 일시	2021.2.16.(수)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고준성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최희동 (044-200-5851)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 2.18.(금), 「해적피해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8일(금)부터 「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 서아프리카 해적사건 발생현황 : ('17)45건 → ('18)82건 → ('19)67건 → ('20)84건 → ('21)35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

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 경비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해적피해에서 선박,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경비업체

** 업체의 재정, 인력, 교육 및 무기를 포함한 장비운영 계획 등을 검토 심사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뀝니다!



1

해적위험해역 정의 변경 등

지금은(제2조)

해적위험해역

위험해역

위험예비해역

해적위험해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

앞으로는(제2조, 제8조)

해적위험해역

위험해역

위험해역과 위험예비 해역을 일원화

고위험해역

해적피해가 집중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

해적위험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지정

신중한 검토를 위해
해적피해예방협의회 심의

서아프리카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2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앞으로는(제11조의2, 제11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할 수 있음

▶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진입제한은 국제항해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승선자에도 적용

진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

▶ 선박소유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원·승선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면허 취소,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해운법에 따른 선원 취업주선 제한도 가능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함

▶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 ▶ 선원대피처 설치
- ▶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경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 ▶ 연안국 소속 군·경찰 함정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아덴만 위험해역





2022년 2월 18일부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뀝니다!



3 출입·점검 대상 확대 등

지금은(제12조)

선원대피처를 대상으로 함

- ▶ 선원대피처의 설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
- ▶ 선박소유자등에게 자료제출 요구가능



앞으로는(제12조, 제12조의2)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함

- ▶ 선박소유자 등,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제출 요구가능, 출입점검 가능

출입·점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4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승인요건 개선

지금은(제24조)

적격성심사 대상

- 국내 업체



앞으로는(제24조)

적격성심사 대상

- 국내 업체
- 외국 업체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 업체의 국내 사무소 설치 의무화

“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대상

-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 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 해적행위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 해상특수경비원 사용에 관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출입점검 대상

- 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 선원 대피처 설치 운영여부
- 소속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여부
- 위탁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실시여부
-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5 해상특수경비원 학력기준 완화

지금은(시행령 제10조)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무도분야 전공·졸업’

앞으로는(시행령 제10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무도분야 전공·졸업’